

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10월 17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‘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’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취지에 따르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세계유산등재 관련 민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‘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’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위촉하도록 하되,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‘양성평등실무위원회’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인정 (안 제4조제2항)
- 나. 서울특별시장은 학술단체 또는 민간 전문가가 한양도성과 관련된 해외교류·홍보, 학술회의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여비,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9조제4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양성평등기본법」 및 「문화재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(2018. 8. 2. ~ 8. 22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행정1부시장”을 “행정(1)부시장”으로, “서울시”를 “서울특별시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의한”을 각각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학술단체 또는 민간전문가가 한양도성과 관련된 해외교류·홍보, 학술회의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여비,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, 행정1부시장 및 문화본부장, 한양도성 주변 자치구청장, 문화재청·서울특별시교육청·수도방위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대표와 시장이 지명하는 <u>서울시</u>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.</p>	<p>제4조(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----- 행정(1) 부시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</u>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④ ~ ⑥ (생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제7조(유산구역 및 완충구역) ① (생략)	제7조(유산구역 및 완충구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유산구역은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5조에 의한 문화재구역과 제27조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한다.	② -----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.
③ 완충구역은 「문화재보호법」 제13조에 의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한다.	③ -----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.
제9조(민간에 대한 지원) ① (생략)	제9조(민간에 대한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, 문화, 마을,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<u>기타</u> 주거환경 개선,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6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
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원의 대상, 범위,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	③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252 275 422 315"><신설></p> <p data-bbox="215 674 786 716">제12조(사무의 위탁) ① (생략)</p> <p data-bbox="252 808 786 1052">② 제1항에 의한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</p>	<p data-bbox="852 275 1386 651">④ 시장은 학술단체 또는 민간 전문가가 한양도성과 관련된 해외교류·홍보, 학술회의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여비,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 data-bbox="815 674 1386 784">제12조(사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 data-bbox="852 808 1386 1115">② ----- 따른 ----- ----- ----- ----- -.</p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 (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예산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

4. 작성자

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도성정책팀 엄기갑(2133-2653)